

부산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나468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이재영

변론 종결 2020. 9. 16

판결선 고 2020. 11. 4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3. 13. 선고 2018가단1326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민판사 신민석판사 양우창